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97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2월 17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필수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지원 사업 및 위원회 심의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조례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 로 하고, 본문의 필수노동자 지원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으로 함.
- 필수노동자 정의를 확대하고, 대면업무의 나열된 대상 업종을 삭제함 (안 제2조제2호 · 제4호).
- 위험수당을 삭제하고 필요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7조 제2항 · 제8조제3호).
-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에 “안전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”,

위원회 심의사항에 “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” 을
추가함(안 제7조제1호·제8조제1호 신설).

-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수정함(안 제11조제1호).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안 제1조 중 “조례에는” 을 “조례는” 으로 하고, “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” 를 “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” 로 한다.

안 제2조제2호 중 “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” 를 “고용 형태를 불문하고,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” 을 “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의료, 돌봄, 복지, 안전, 물류, 운송업, 환경미화 등” 을 “시민의 생명·안전 및” 으로 한다.

안 제3조 중 “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” 를 “필수업종에” 로 한다.

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종의 업무가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재난 상황의 종료 후에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조사·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안 제5조 제목 “제5조 (필수노동자 지원 계획수립 등)” 을 “제5조(지원계획 등)” 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계획” 을 “지원계획” 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
3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
4.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안 제6조제1항 중 “경우” 를 “경우에는” 으로, “각 업종” 을 “필수업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지원” 을 “보호 및 지원” 으로 하고,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
2.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3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4.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
5. 그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안 제7조제2항 중 “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” 를 “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우” 를 “경우에는” 으로, “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” 를 “있다” 로 한다.

안 제8조의 제목 “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” 을 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” 으로 하고, 본문 중 “지원” 을 “보호 및 지원” 으로 하며,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
3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중 “지원” 을 각각 “보호 및 지원” 으로 한다.

안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

안 제13조제1항 중 “경우” 를 “경우에는” 으로, “5일전” 을 “7일 전” 으로, “회의일시” 를 “회의 일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안 제14조 중 “지원” 을 “보호 및 지원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<u>지원</u>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</u>에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<u>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</u>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2. “필수노동자”란 「<u>근로기준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 3. “필수업종”이란 재난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. 	<p>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<u>보호 및 지원</u>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</u>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<u>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</u>를 강화함으로써 <u>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</u>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(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제정안과 같음) 2. “필수노동자”란 <u>고용형태를 불문하고,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</u>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 3. “필수업종”이란 재난 <u>상황에서</u>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.

제 정 안	수 정 안
<p>4. “대면업무”란 <u>지역사회에서 의료, 돌봄, 복지, 안전, 물류, 운송업, 환경미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적용대상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재난상황 및 특성, 공동체 유지,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<u>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(시장의 책무) <u>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조 (필수노동자 지원 계획수립 등) ① <u>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4. “대면업무”란 <u>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생명·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적용대상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재난상황 및 특성, 공동체 유지,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<u>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<u>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종의 업무가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③ <u>시장은 재난 상황의 종료 후에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조사·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조(지원계획 등) ① <u>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필수노동자 <u>지원</u>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. <u>분야별 시책,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</u> 3. 필수노동자 <u>지원</u>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.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<u>지원</u>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<u>계획</u>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<u>경우</u> 시 소재 <u>각</u> 업종의 일반현황, 근무환경,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필수노동자 <u>보호 및 지원</u>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. <u>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</u> 3. 필수노동자 <u>보호 및 지원</u>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. (제정안과 같음) 5.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<u>보호 및 지원</u>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<u>지원계획</u>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<u>경우</u>에는 시 소재 <u>필수업종</u>의 일반현황, 근무환경,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<u>범위에서</u>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지원 사업 등)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<u>지원을 위하여</u>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필수노동자의 <u>근로조건 및 근무환경</u> 개선을 위한 사업 2. 필수노동자 <u>지원을</u> 위한 조사·연구 사업 3.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<u>재화 또는 서비스</u> 제공 4. (생 략) <p>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<u>경우 위험수당을</u>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<u>경우</u>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지원 사업 등)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<u>보호 및 지원을</u>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필수노동자의 <u>안전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</u> 사업 2. 필수노동자의 <u>노동조건 및 노동환경</u> 개선을 위한 사업 3. 필수노동자 <u>보호 및 지원을</u> 위한 조사·연구 사업 4.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<u>서비스</u> 제공 5. (제정안과 같음) <p>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<u>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</u>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<u>경우에는</u>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
<p>제8조(<u>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</u>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<u>지원 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8조(<u>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</u>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<u>보호 및 지원 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. 필수노동자 <u>지원</u>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. <u>필수노동자 위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</u> 4. 그 밖에 필수노동자 <u>지원</u>에 필요한 사항 <p>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<u>지원</u>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(생 략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. 필수노동자 <u>지원</u>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<p>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u> 2. (제정안과 같음) 3. 필수노동자 <u>보호 및 지원</u>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<p><u><삭 제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그 밖에 필수노동자 <u>보호 및 지원</u>에 필요한 사항 <p>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<u>보호 및 지원</u>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(제정안과 같음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제정안과 같음) 2. 필수노동자 <u>보호 및 지원</u>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. (제정안과 같음) <p>제11조(위원의 해촉) (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</u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p> <p>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</p> <p>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<u>경우</u> 회의 개최 <u>5일전</u> 까지 <u>회의일시</u>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제14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<u>지원</u>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</p>	<p>2.~4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<u>경우에는</u> 회의 개최 <u>7일 전까지</u> <u>회의 일시</u>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~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<u>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 <p>제14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<u>보호 및 지원</u>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2. “필수노동자”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,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필수업종”이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.
4. “대면업무”란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생명·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재난상황 및 특성, 공동체 유지,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종의 업무가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재난 상황의 종료 후에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조사·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 등) ①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
2.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

3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

4.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, 근무환경,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 사업 등)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
 2.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 3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 4.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
 5. 그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
3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

2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

담당 과장으로 한다.

- 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